

〈비용편익분석연구회 발표자료〉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의원입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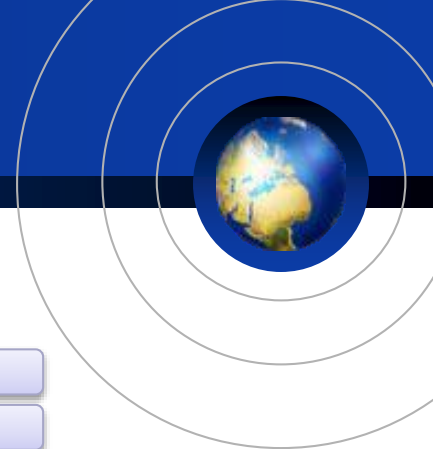
2014년 3월 27일

김태운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과학기술정책학과 주임교수]

[전, (사)한국규제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간사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 Contents -



I. 서언: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1.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2.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의의

II. 선진국사례

- | | |
|----------------------|----------------|
| 1. 보편적인 경향: 신중한 의원입법 | 4.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
| 2. 선진국 사례 개관 | 5. 독일의 규제영향평가 |
| 3. 미국의 규제영향평가 | 6. 프랑스의 규제영향평가 |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1. 준거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2. 고려사항: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임을 감안한다면...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틀의 제안

IV. 우리나라 의원입법 사례 분석

1. 수범사례
2. 유의사례
3.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결과

V. 정책제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방안

I. 서언: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1.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1.1. 우리나라 의원입법의 일반적인 문제점

- **의원입법의 비중 급증**: 상대적 빈도 및 통과 입법안의 실질적인 중요성 급증
- 의안 품질제고 문화 및 절차 부재: 국회의원간 상호견제 및 협의 결여
- 행정부의 민원성 규제 입법의 관례화: **강력해진 관료제와 국회**의 지대추구의 경향
- 공학적/경제적/사회적 입법실증: 거대담론과 정치적 정서 과잉때문에 사회총후생과 실질적 피해자/부담자는 도외시

1.2.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 사회총후생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치적 규제” “공급 인센티브” 팽배
- 졸속 입안과정상 충분한 숙의의 만성적 부족
- 대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미흡
- **행정부의 우회를 촉진하여 행정부의 규제개혁도 사실상 거세**
- 재정부담을 평가하는 “비용추계” 제도와 형평성 확보해야

I. 서언: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2.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의의

- 사회총후생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
- 충분한 숙의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공론 참여
- 대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촉진
- 재정부담을 평가하는 “비용추계”제도와 형평성 확보



- 과잉입법을 견제하여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극대화**
- 품질 높은 규제대안들이 도입되어 **공공복리의 증진**
- 규제의 주된 희생자/비용부담자인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
- 특정 이해관계의 생성을 차단하여 **지대추구행위의 팽배 및 영속화를 견제**

II. 선진국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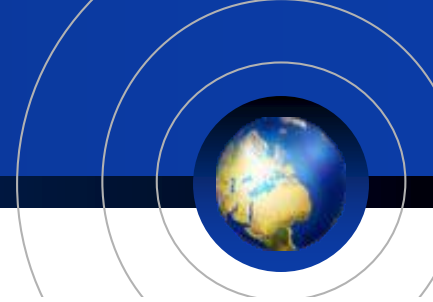
1. 보편적인 경향: 신중한 의원입법

(1) 선진국에서는 그간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심의를 특별히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는 바,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입법은 정부발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의원입법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는데 있음.

(2) 의원입법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예외적인 경우인 미국의 경우는 의안에 대한 심사가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다단계이며 다층적인 과정속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지는 관례가 있으며, 입법조사처(CRS), 예산처(CBO), 정부책임처(또는 감사원, GAO)가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지원하고 있음.

(3)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규제도입과 관련되어 행정부의 효율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규제개혁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회입안 규제에 대하여도 행정부에게 적용하는 영향분석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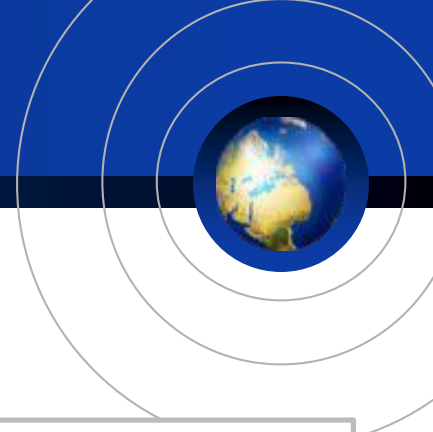
II. 선진국 사례



2. 선진국 사례 개관

	법률안 제출권 의회 독점 국가			법률안 제출권 정부/의회 공유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배경 및 동향	법률안에 대한 의회의 자체 심의가 매우 엄정하고 다층적이며 복잡함	정부와 의회의 엄격한 구별이 모호하며 정부가 의회를 지원	영국과 유사	최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의 관점을 의회에 접목중	의회의 의사결정절차를 합리화하는 200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국민발의 법률안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직접민주주의를 지향
규제의안의 심의과정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안들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정부제출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지만, 의원입법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 장려하며 특히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는 필수적		-연방규범통제위원회의 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서, 의회의 위임이 있으면 의안영향분석 수행함 -통상 의회의 삼독회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향분석이 시도됨	-정부법률안에는 입법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의원입법에 대하여도 유사하다고 해석되고 있음.	위원회가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의회 소속 감사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음
지원 전문기관	CBO, CRS, GAO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영향분석 수행	정부기관인 Regulatory Impact Unit (Cabinet Office)도 의회를 지원	정부기관인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이 의회를 지원	연방규범통제위원회	의원제출법률안에 대한 국사원 (Conseil d'Etat)의 의견제시권	
법안 발의 및 가결추세		개별의원 발의건이 다수이지만, 가결되는 법안의 80%이상이 사실상 정부 발의안		80%이상이 정부 발의		90%이상은 정부발의, 나머지 대부분도 국민직접발의
비용추계제도	명시적으로 도입			명시적으로 도입		명시적으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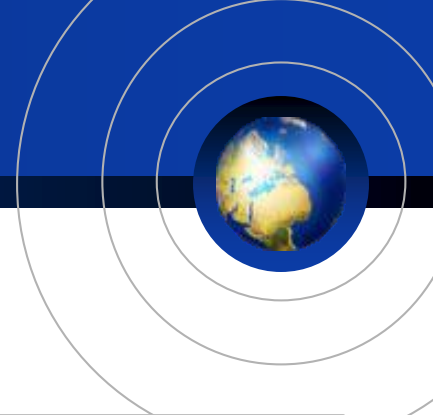
II. 선진국사례



3. 미국의 규제영향평가

배경 및 동향	법률안에 대한 의회의 자체 심의가 매우 엄정하고 다층적이며 복잡함
규제의안의 심의과정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안들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지원 전문기관	CBO, CRS, GAO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영향분석 수행
비용추계제도	명시적으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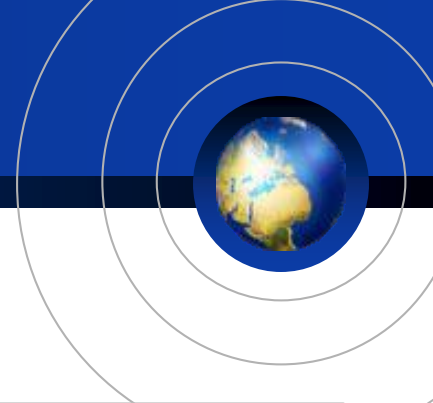
II. 선진국사례



4.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배경 및 동향	정부와 의회의 엄격한 구별이 모호하며 정부가 의회를 지원
규제의안의 심의과정	정부제출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지만, 의원입법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 장려하며 특히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는 규제영향분석이 사실상 필수적
지원 전문기관	정부기관인 Regulatory Impact Unit (Cabinet Office)도 의회를 지원
법안 발의 및 가결추세	개별의원 발의건이 다수이지만, 가결되는 법안의 80%이상이 사실상 정부발의안

II. 선진국사례



5. 독일의 규제영향평가

배경 및 동향	최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의 관점을 의회에 접목중
규제의안의 심의과정	-연방규범통제위원회의 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서, 의회의 위임이 있으면 의안영향분석을 수행함 -통상 의회 의 삼독회 과정중 사실상의 규제영향분석 이 시도됨
지원 전문기관	연방규범통제위원회
법안 발의 및 가결추세	80%이상이 정부 발의
비용추계제도	명시적으로 도입

II. 선진국사례



6. 프랑스의 규제영향평가

배경 및 동향	의회의 의사결정절차를 합리화하는 200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
규제의안의 심의과정	- 정부법률안에는 입법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 의원입법에 대하여도 유사하다고 해석되고 있음.
지원 전문기관	의원제출법률안에 대한 국사원 (COncseil d'Etat)의 의견제시권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1. 준거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_전체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능력)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1. 준거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_1

항 목	분석서기제사항	작성 방법
1.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배경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로 대처하려는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나 경위(예:사고나 재난의 발생 등)를 기술 ○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직접 및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 ○ 문제의 심각성(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 또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
	1-2.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꼭 개입해야만 할 이유 또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시장실패) 등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할 때 규제의 신설.강화가 정당화 되므로, 우선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기술 - 기존의 규제나 정부개입이 문제해결에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기술 - 아래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 문제해결이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규제 대안 : 보조금 지원, 경제적 유인(관련 세금 감면 혜택, 저리 융자 등), 사회운동(각종 캠페인, 공익광고 등)의 전개 등 ○ 유사한 기존규제와 비교하여 중복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설.강화 필요성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와 중복.모순 여부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술기준.인증과의 중복 및 표준(KS) 인용여부를 검토 ○ 필요시 국내외의 유사사례 및 제도를 원용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1. 준거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_2

항 목	분석서기제사항	작성 방법
<p>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p>	<p>2-1. 규제대안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 ○ 상정된 대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의 확대를 위해 명령지시적 규제보다는 시장 유인적 규제 우선 *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우선 * 투입기준 규제보다는 성과기준 규제 우선 *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여지 검토 -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외국인투자 등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적은 규제대안 우선 - 다양한 의무이행방법에 대한 검토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이행 방법의 선택여지 부여, 민원처리기한 경과시 의제 처리 등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1. 준거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항 목	분석서기재사항	작성 방법
<p>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p>	<p>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을 세부항목으로 열거(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세부항목으로 열거(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 -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된 측정 및 추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한 수치 제시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진입제한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독과점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여부를 검토 - 이런 목적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집행시기, 집행방법 등의 차별)이 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인지 검토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1. 준거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_3

항 목	분석서기제사항	작성 방법
3.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문제의 심각성, 국내외 유사사례, 국제적 기준,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 ○ 상위법 위임근거가 있는지, 상위법 위임범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 ○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리감독, 보고 절차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도입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행정부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부담의 감축이 가능한 요소가 없는지 검토
	3-2.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여부(서면, 공청회 등 협의 방식 및 일시와 장소 등 명시) -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명시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집행자원·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의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검토(기술적 집행 가능성) - 현행 행정인력·예산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한지, 인력·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검토(행정적 집행 가능성) - 규제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필요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근거 제시 - 기존 규제가 있을 경우 그 규제의 집행실적이나 규제준수율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제시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들의 개발



2. 고려사항: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RIA와의 당위적 차별성

- 국가개입의 원천적인 근거가 된다 → “정부개입의 정당성”
- 추상적인 법률의 수준이어서, 매우 구체적인 분석이나 논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비용과 편익의 항목의 확인과 그 편중여부”
- 다양한 대안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 → “유연성”
- 기존 제도실패를 눈가림하는 의도 → “기존제도의 보완이나 개폐로 문제해결”
- 법률의 불필요한 지속성을 통제 → “규제일몰”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틀의 제안_전체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1.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1_1. 국가개입의 필요성
	1_2. 규제 신설의 불가피성
	1_3. 규제의 합법규성
2. 규제의 예상되는 결과	2_1. 사회적인 후생의 증가
	2_2. 비용의 보편성
	2_3. 편익의 보편성
	2_4. 부작용
3. 규제 수단의 적절성	3_1. 규제의 성과
	3_2. 규제대안의 존재
	3_3. 준수 (집행비용)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틀의 제안_1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평가내용
1.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1_1. 국가개입의 필요성	<p>당면한 문제의 속성이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신설을 통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국가개입: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의 신뢰 훼손, 준법정신의 체감, 민간의 자율적 질서의 교란 등이 우려된다.
	1_2. 규제 신설의 불가피성	<p>기존 규제나 정책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규제의존경향: 현행 규제나 제도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구현하지 못하는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보다 엄정한 분석을 수행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이 규제 신설에 선행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근시안적 영합: 단기적인 여론의 향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적인 여파가 있는 제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이 있다.
	1_3. 규제의 합법구성	<p>제안된 규제가 법률에서 공고하고 있는 법률의 목표를 달성하는 합당한 수단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잉입법의 소지: 제안된 규제는 해당 법률의 입법정신이나 목적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한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도와의 상충: 제안된 규제는 해당 법률이나 여타의 다른 현행 법령 등과 상당한 수준의 충돌이 있다.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틀의 제안_2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평가내용
2. 규제의 예상되는 결과	2_1. 사회적 후생의 증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후생의 증가가 예상되는가?
	2_2. 비용의 보편성	규제의 비용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소리없는 다수: 규제가 익명의 다수(anonymous majority)의 권익이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규제가 소비자의 권익이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2_3. 편익의 보편성	편익이 특정한 집단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가?
	2_4. 부작용	규제로 인하여 부정비리나 사회적 갈등의 분출, 민간의 자율성이나 자기책임의식, 자유로운 정신의 창발 등의 훼손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정비리: 부정비리를 상당히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갈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input type="checkbox"/> 정부 비대화: 행정부의 불필요한 확대 내지는 관료제나 준정부부문의 불필요한 팽창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input type="checkbox"/> 고용: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민간 위축: 장기적으로는 자유로운 정신의 창발, 민간의 자율성, 자기책임의식 등을 훼손할 것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틀의 개발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틀의 제안_3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평가내용
3. 규제 수단의 적절성	3_1. 규제의 성과	<p>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여 그 달성 여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규제일몰: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회적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규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규제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규제일몰이나 유예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_일괄 평가</p>
	3_2. 규제대안의 존재	<p>제시되는 규제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규제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p>
	3_3. 준수 (집행비용)	<p>피규제자가 제안된 규제를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비율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p> <p><input type="checkbox"/> 책임전가: 현재의 행정 여건상 준수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제의 해결과 향후 책임을 행정부나 국민일반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보완조치 결여: 규제가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기타 지원/보완 방안 등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완내지는 보조 조치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p>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RSRS 분석을 중심으로



1) 수범사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531)**은
 - 관련규정의 미비로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증액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신종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안으로서,
 - 정보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 휴대전화 소액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527)**은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안으로서,
 -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753)**은
 - 발전용 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안으로서,
 - 원자로 해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해체 작업시 혼란을 줄일 수 있기에 필요성이 인정됨.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106)**은
 -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는 의안으로서,
 - 여행자 보호라는 소비자 권익보호 수단으로써의 적절성이 높이 평가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80)**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마약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안으로서,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됨.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RSRS 분석을 중심으로



1) 수범사례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741)**은
 - ‘국토대장정’ 과 같이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의안으로서,
 - 청소년 활동 계획의 신고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관련 사고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714)**은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안으로서,
 -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을 통해 법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474)**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하는 의안으로서,
 - 카드사용 보편화 시대에 카드 이용자의 권익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108)**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인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의안으로서,
 - 규제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을 것이라는 점과 규제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RSRS 분석을 중심으로



3) 유의사례_특수이익에 영합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936)은

- 여행자의 편의 증진 및 여행안전의 확보와 여행업의 활동촉진 등을 위한 「여행업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의 정의, 영업요건 등 여행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의안으로서,
- 기존 여행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렌트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 됨.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992)은

-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의안으로서,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cctv 업체에만 이익을 줄 것으로 평가됨.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007)은

-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의안으로서,
- 이익단체를 위한 우회적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평가됨.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RSRS 분석을 중심으로



2) 유의사례_실효성 없는 전시성 규제 사례(1/2)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099)**은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하려는 의안으로서,
 - 불필요한 국가개입으로 해당 부처 공무원 숫자만 늘릴 것이며,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377)**은
 -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안으로서,
 - 규제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방과후 사용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평가됨.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622)**은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해서도 WTO 규정 또는 각 국가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실시하려는 의안으로서,
 -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금지품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규제로 평가됨.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SRs 분석을 중심으로



2) 유의사례_실효성 없는 전시성 규제 사례(2/2)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825)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사전신고 외에 작업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의안으로서,
- 석면제거사업자에게 과도한 보고서 부담을 지우고 보고서 작성을 규제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정부에서는 거의 없어 사실상 과도하면서도 실효성 없는 규제로 평가됨.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312)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담배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안으로서,
- 실효성 없는 전시성 규제로 국민불편만 야기할 것으로 평가됨.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351)은

- 개인과외교습자를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한 장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학습자의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 간의 1대 1 교습이라는 개인과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의안으로서,
- 규제강화효과불분명하며, 오히려 불법과외만 양산할 것으로 평가됨.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RSRS 분석을 중심으로

2) 유의사례_국민통합저해 사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020)**은
 - 장기·계속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안으로서,
 -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으로 평가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121)**은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점유율 및 납품업자 등의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규제하고,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안으로서,
 - 대규모유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규제하려는 것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의 각종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규제로 평가됨.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330)**은
 -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2개월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의안으로서,
 - 시장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해당 제품군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규제로 평가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05806)**은
 - 현행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안으로서,
 -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독점규제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과잉규제이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억제할 것으로 평가됨.

IV. 우리나라 사례 분석: KRSRS 분석을 중심으로



2) 유의사례_과도한 벌칙강화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186)은
 -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증액 청구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이 있는 연도부터 증액을 청구하는 날이 속한 연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안으로서,
 - 가격규제의 문제점에 더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제로 평가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996)은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안으로서,
 - 기존 법규의 집행의 문제로서 처벌 강화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05)은
 - 불량식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안으로서,
 -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입법이며, 10배 과징금은 과잉입법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규제로 평가됨.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576)은
 - 국립공원 등에서 낙서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낙서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등에서 낙서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수준을 강화하고

IV. 우리나라 의원입법 사례 분석



3.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결과

1. 의원입법규제모니터링 현황

(1) 19대 의원입법 규제 현황과 모니터링 대상

19대 국회개원 후 2013년 10월 31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7,428건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요규제사무”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 849건

(2) 의원입법규제모니터링의 경과

○ 2012년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 구성	○ 2012년 12월 18일	4차 모니터링
○ 2012년 6월 19일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 규제모니터링단 1차 워크숍	○ 2012년 12월 31일	5차 모니터링
○ 2012년 7월 11일	전직 회장단 등 학계 원로자문회의	○ 2013년 1월	1,2,3,4,5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법률안 345건)
○ 2012년 7월 16일	1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4월 25일	6차 모니터링
○ 2012년 8월 29일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 규제모니터링단 2차 워크숍	○ 2013년 8월 25일	7차 모니터링
		○ 2013년 9월 25일	8차 모니터링
○ 2012년 9월 5일	2차 규제모니터링	○ 2013년 10월 10일	9차 모니터링
○ 2012년 9월 24일	1,2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법률안 101건)	○ 2013년 10월 25일	10차 모니터링
		○ 2013년 12월 10일	11차 모니터링

(사)한국규제학회의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 구성원을 풀로 하여, 모니터링 대상 의안들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정치, 행정, 경제 전문가 10인이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의원입법규제모니터링에 참여한 전문가의 연인원은 30명 내외임.

IV. 우리나라 의원입법 사례 분석



3.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결과

2. 2013년 의원입법규제모니터링 결과의 대강

- 대상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규제모니터링 6차~11차)
- 대상의안(규제의안/총 발의의안): 600건/3662건

2013년 평가 요약	1.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2.규제의 예상되는 결과				3.규제수단의 적절성			가중치 점수합계	100점 만점 환산점수
	1_1. 국가개 입의 필요성	1_2. 규제신 설의 불가피 성	1_3. 규제 의 합법 성	2_1. 사회적 인 후생의 증가	2_2. 비용의 보편성	2_3. 편익의 보편성	2_4. 부작용	3_1. 규제의 성과	3_2. 규제대 안의 존재	3_3. 준수(집 행비용)		
	2.86	2.92	2.90	3.06	3.05	3.28	2.85	2.99	2.86	2.72	2.94	58.80

IV. 우리나라 의원입법 사례 분석



3.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결과

3. 규제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례(일부 자료에 근거한 임시분석): “규제수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1) 소속 정당별 규제수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점수 간 t-test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양쪽)
평가점수	새누리당	215	3.14	.51	.03	2.851	.005
	민주당	226	2.99	.58	.04		

(2) 선수(Seniority)별 규제수준

대표발의자의 선수(초선과 재선이상)와 평가점수 간 t-test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양쪽)
평가점수	초선	214	3.09	.55	.04	1.592	.112
	재선이상	260	3.01	.56	.03		

(3)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출신 구분에 따른 규제수준

대표발의자의 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 의원)구분과 점수 간 t-test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양쪽)
평가점수	지역구의원	267	2.99	.56	.034	.061	.951
	비례대표	72	2.98	.54	.063		

(4) 발의 의원수와 규제수준

(5) 대표발의자의 소속 상임위별 규제수준

V. 정책제언



1.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꼭 도입되어야 한다.** 아마도 국회법 79조3항정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시: 제79조의3(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RIA에 비하여 강제성과 구속력이 떨어져도 큰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평가결과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왜냐하면) 불성실한 규제영향평가는 개별 의원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면책되기 어려우므로

- 공공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자극하는 방식의 과정과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제영향평가의 초점이, 분석보다는 이해관계자 확인과 의견 청취 등 공청회적 속성이 높으므로

2. 행정부의 **규제총량관리제도**도 정부부처에 대한 우회(청부)입법을 줄이게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합니다.